연구수당지급지침

제정 2012.10.31 개정 2014.07.23 개정 2018.01.17 개정 2021.06.28

- 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동기 유발 및 연구개발과제수행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.
- 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지침은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수행하는 정부수탁연구과제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외 공동연구개발과제는 협약에 의해 적용할 수 있다.
- 제3조(연구수당의 정의) 연구수당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"해당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·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"으로 정의한다.
- 제4조(지급대상) 공사에서 수행하는 정부수탁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.
 - 1.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
 - 2. <삭제 2018.01.17>
- 제5조(연구수당 지급의 권한) 공사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에 대한 지급 권한은 연구 개발주관부서장에게 있으며 다음의 각호에 위배될 경우 지급을 금지할 수 있다.
 - 1. 지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
 - 2. 하기의 제7조 (제약 및 금지조건)에 부합할 경우
 - 3. 기타 연구개발주관부서장이 지급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
- 제6조(집행 및 관리) ①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집행한다.
 - ② 연구수당은 연구개발주관부서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반기별, 연간별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별도의 협약에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협약에 따라 지급한다.
 - ③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연구수당은 조성된 예산 내에서 연구개발주관부서장이 제8조에 의거 개인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, 지급한다.
 - ④ 연간 연구수당 지급액은 인건비의 10%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.
- 제7조(제약 및 금지조건) ① 당해 연구개발과제가 중지된 경우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.
 - ② 연구책임자(또는 1인)에게 연구수당 50%이상 지급할 수 없다. 다만, 참여연구원이 2명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- ③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 없이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.
 - ④ 정부수탁연구과제 수행시 해당 과제 총사업비 기준으로 우리공사 현금분담금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공사 출연금(현물포함) 비율을 공제한 인건비에 대해서만 집행한다.<개정 2021.06.28>

- ⑤ 상기조건에 위배 시 연구개발주관부서장은 지급한 금액을 즉시 환수하도록 한다.
- 제8조 (연구수당의 지급기준) ① 연구책임자는 별지서식1, 별지서식2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연구수행활동, 연구개발성과 등을 고려한 지급 대상자별 기여도를 평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기여도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<개정 2018.1.17>
 - ② 개인별 지급금액은 산출된 지급율에 따라 지급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별지서식3의 연구수당 지급 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<개정 2014.07.23> <개정 2018.1.17>
 - ③ 연구과제 수행 중 퇴사하여 과제에서 참여 제외된 연구원에게는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.<신설 2014.07.23>
 - ④ <삭제 2018.01.17>

부 칙

- 이 지침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지침은 2014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지침은 2018년 0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지침은 2021년 0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지서식1> <개정 2018.01.17>

기여도 평가표

 □ 과
 제
 명
 :

 □ 연
 구
 기
 간
 :

 □ 연
 구
 책
 임
 자
 :

 □ 평
 가
 대
 상
 자
 :

항 목	착안점	배점	평점	비고
1.역할 비중	- 과제에 참여한 역할비중	20		
2.개인 목표달성도	- 추진 계획 일정대비 목표달성도	20		
3.협동성	- 팀 동료와 소통 및 업무분담 노력 - 연구행정 지원 등 협업노력	20		
4.과제수행의지 (적극성/책임감)	- 성과도출을 위한 수행노력의 성실도 - 연구개발 참여의 적극성	20		
5.연구성과	- 연구보고서, 논문, 특허, 시제품 제작 등 성과의 우수성	20		
	합 계	100		

20 . . .

연구책임자: (인)

<별지서식2> <신설 2018.01.17>

연구수당 평가표

□ 과 제 명:

□ 연 구 기 간:

□ 연구책임자:

(단위: 원)

순번	직급	성명	사번	① 참여율 (%)	② 참여 기간	③기여도점수 ÷100	④기여율(%) (①×②×③)	⑥지급율 (④÷⑤)
1								
2								
÷	:	:	:	:		:	:	:
계							5	

① 참여율(%) : 해당과제의 해당 연구차년도 개인별 과제 참여율

② 참여기간 : 해당과제의 해당 연구차년도 개인별 참여 개월수

③ 기여도 점수 ÷ 100 : (개인별 기여도 세부평가 점수) ÷ 100

④ 기여율(%) : ① 참여율 × ② 참여기간 ×③ 기여도 점수

⑤ 지급대상자 기여율 총합

⑥ 지급율(%) : 연구수당 지급총액 대비 개인별 지급비율(개인별 기여율/지급대상자 기여율 총합)

⑦ ③ 기여도 점수가 40점 이하인 참여연구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첨부 : 개인별 기여도 세부평가표 각 1부

※ 예시

순번	직급	성명	사번	① 참여율 (%)	② 참여 기간	③기여도점수 ÷100	④기여율(%) (①×②×③)	⑥지급율 (④÷⑤)
1	연구소장	홍길동	11111	15	12	0.95	171	0.31
2	차장	김길동	22222	20	10	0.90	180	0.32
3	과장	이길동	33333	30	8	0.85	204	0.37
계							⑤ 555	1

* 연구수당 총액이 3,000,000원일 경우

* 상기의 예시 대상자 3명시 홍길동의 지급율 및 지급금액 산출

③ 기여율(%) : = 15(%)×12(개월)×0.95 = 171(%)

④ 지급대상자 기여율 총합 : 171(%)+180(%)+204(%) = 555(%)

⑤ 지급율(%) : 171(%)÷555(%) = 0.31

* 연구수당 지급금액 : 3,000,000원×0.31 = 924,000원이 된다.

<별지서식3> <신설 2018.01.17>

연구수당 지급표

□ 과 제 명:

□ 연 구 기 간:

□ 연구책임자:

(단위: 원)

순번	직급	성명	사번	지급율(%)	금액	비고
1						
2						
3						
2						
3						
	계					

위와 같이 연구과제 참여자에 대한 연구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.

20 년 월 일